8. 후원회 등록 신청

가. 후원회 대표자는 지방의회의원인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에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후원회 등록신청서 제출

- □ 비례대표시·도의회의원후원회 : 관할 시·도위원회
- □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후원회 : 관할 구·시·군위원회
- □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원회 : 관할 구·시·군위원회
- □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원회 : 관할 구·시·군위원회

체크 포인트

- □ 후원회 정관 내용이 법과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
- □ 후원회 등록신청 내용과 구비서류와의 일치 여부
- □ 후원회 명칭과 인영내용의 일치 여부
- 나. 다음의 경우에는 후원회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.
 - 후원회 등록신청에 있어서 후원회 성립요건에 중대한 흠이 있어 처음부터 보정·보완을 할 수 없는 경우
 -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보정· 보완 요구를 받았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보정·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

후원회 등록 관련 과태료(법 제51조)

- □ 후원회 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자
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정관작성 ➤ ^{창립} 개	l총회 최 ➤ ^호	회 의 록 학 성 ➤	후 원 회 지 정	▶ 인 영 조 각	➤ 사무소 설 치	>	등 신	록 청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

[작성예시]

[규칙 별지 제4호 서식]

			후원회 등록신청/	서				
문서번호								
명	;	칭①	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					
사무소의	소지	내 지 ②	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, 2층 201호	전화번호③	02-000-0000			
대표자④	성	명	김중앙(한자 : 金中央)	주민등록번호	710101-1234567			
4 # 7 4	주	소	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○○ (○○동, ○○아파트)	전 화 번 호	010-1234-5678			
정관 또	는	규 약	붙임	1				
회인 및 대표/	아 직인	의 인영	붙임	3				

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 「정치자금법」 제7조제1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제6조제1항에 따라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월

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대표자 직인 ⑤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※ 구비서류

- 1. 정관 또는 규약 1부.
- 2.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.
- 3. 인영서〈별지〉 1부.
- 4. 후원회지정서 1부.
- 5.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1부.
- 6.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.
- 주 1. "명칭"칸에는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 - 2. 회의록은 기록자·확인자의 서명·날인이 있어야 하며,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"원본대조필" 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.

	찬린李히	히 이 로	흐 워 히	이 역	사 무 소	등 록
정관작성 ▶	개 최 ▶	작 성	지 정 >	조 각	> 설 · 치 >	o ㄱ 신 청

	작 성 요 령
1	후원회의 명칭을 적습니다. 예) 과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
2	후원회 사무소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. ※ 도로명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구주소(지번주소) 가능
3	후원회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 ※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전화번호 가능
4	대표자의 성명(한자 포함)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 ※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전화번호 가능
(5)	후원회 대표자의 신고한 인영(직인)을 찍습니다.

9. 회계책임자 신고

가. **후원회 대표자는** 후원회 등록신청서 제출 시 **후원회 회계책임자**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업무TIP

- □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를 두는 경우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별개로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반드시 선임·신고하여야 함.
 - 지방의회의원은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음(법 M34조M3항).
- 나. '회계책임자'란 정치자금의 수입·지출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후원회 대표자는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1인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다. 회계책임자 신고 시에는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와 정치자금 수입·지출용 예금통장 사본을 구비하여야 합니다.

업무TIP

- □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회계책임자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예금계좌 개설 신고는 생략합니다.
- 라. 회계책임자는 1명을 선임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둘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.

회계책임자 겸임 불가(법 제34조, 규칙 제33조)

- □ 지방의회의원 회계책임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
- □ 후원회 대표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

마. 최초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시 예금계좌는 **회계책임자의** 명의로 신고하되 수입용 계좌의 경우 1개 이상, 지출용 계좌는 반드시 1개만 사용합니다.

예금계좌 개설요령

□ 1개의 통장을 수입·지출 겸용으로 사용 가능

회계책임자 관련 벌칙 및 과태료(법 제47조, 제51조)

- □ 회계책임자 신고 시 정치자금의 수입·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자
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
- □ 회계책임자 변경 시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 또는 회계장부 등을 인계·인수하지 않은 자
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
- □ 회계책임자 변경 시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 또는 회계장부 등을 인계·인수를 지체한 자
-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□ 회계책임자 선임·겸임·변경신고를 해태한 자
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회계책임자 관련 사항

- □ 선임권자의 회계책임자 겸임
- 「정치자금법」제34조제3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·예비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이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음(2010. 4. 8. 회답).
- 지방의회의원은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음(tl 제34조제3항).
 - ※ 다만, 지방의회의원은 본인이 후원회지정권자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될 수는 없음

[작성예시 1]

[규칙 별지 제27호 서식]

회계책임자 (선임)·(겸임)·(변경)신고서①

문서번호

느기	U-I-							
회 :	계 책 임 자 ②	성 명	김 공 명(한	자 : 金 公 明)	주민등록번호		900101-123450	
외 <i>*</i> 	계 책 임 자 ②	주 소	경기도 여주시	00로 00	전 화 변	보호	010-1234-5678	1234-5678
(선역	(선임)·(겸임)·(변경)연월일③ 20 년 월 일							
겸임]하는 회계책임	자의 신분						
정	치 자 금 예	금 계 좌	예금주	금융기관명	금융기관명 계조		<u>ই</u>	비고
人	OÌ	Q	000	OO은행	С)-()		
수	음 입 용							
지	출	9(4)	000	OO은행	С) - (00	

「정치자금법」 ⑤(제34조제1항)·(제34조제3항)·(제35조제1항)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(선임)·(겸임)·(변경)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사도의회의원(○○구사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대표자 <u>직인</u> ⑥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※ 구비서류

- 1.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.
- 2. 정치자금 수입·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(예금계좌 개설 신고시).
- 3.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·인수서 1부(변경신고시).
- 주 1.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,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 하여야 합니다.
 - 2.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후원회대표자, 지방의회의원이 됩니다.

정관작성	➤ 창립 개	총회 최		의 록 성	➤ 후 지	원 회 정	> 인 조	영 각	➤ 사 [⊆] 설	구 소 치	등 신	록 청
------	-----------	---------	--	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	--------

	작 성 요 령
1	회계책임자 선임 방식에 따라 선임, 겸임, 변경 중 하나를 선택하여 "○" 표시를 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
2	회계책임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 ※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
3	회계책임자를 실제로 선임·겸임·변경한 연월일을 적습니다.
4	지출용 계좌는 반드시 1개만 사용합니다. ※ 1개의 계좌로 수입 및 지출 겸용 가능
(5)	· 선임 - 제34조 제1항 선택 · 겸임 - 제34조 제3항 선택 · 변경 - 제35조 제1항 선택
6	후원회 대표자의 신고한 인영(직인)을 찍습니다.

정관작성 ➤ <mark>창립총회</mark> → 회의록 → 후원회 → 인 영 사무소 설 치 **> 등 록** 신 청

[작성예시 2]

		취 임 동 의	서
성	명 ①	김공명(한자 : 金公明)	
주	소②	경기도 여주시 ○○로 ○○	
생 년 월	일 ③	1990년 1월 1일	
전 화 번	<u>ই</u> (4)	(자택) 02-123-4567	(휴대폰) 010-1234-5678

본인은 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김 공 명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대표자 귀 하

주.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당해 후원회 대표자에게 제출함.

Γ			+121	최		히	\ 2			이 심		ΟI	СĦ	1.1			=	=
	정관작성	>	- 상립 - 개	종외 취	>	외 자	의 녹 성	>	후 지	원 외 정	>	인 조	강	➤	부 소 치	>	등 시	녹 청
			, II	1			0		1,1	0			1		71			0

	작 성 요 령
1)	회계책임자의 성명과 한자를 적습니다.
2	회계책임자가 거주하는 곳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. ※ 도로명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구주소(지번주소) 가능
3	회계책임자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.
4	회계책임자의 자택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. ※ 자택 번호가 없을 시 기재 생략 가능

정관작성 ➤ <mark>창립총회</mark> → 회의록 → 후원회 → 인 영 사무소 설 치 **> 등 록** 신 청

[작성예시 3] - 회계책임자 변경 시 작성

[규칙 별지 제28호 서식]

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 · 인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공명 900101-1234567 자 계 이 (전 회계책임자) 주소 경기도 여주시 ○○로 ○○ 전화번호 02-000-000 성명 한라산 주민등록번호 710101-1234567 자 ٥J 수 (현 회계책임자) 충청북도 단양군 〇〇로 〇〇 주소 전 화 번 호 02-000-0000 인계 · 인수내역 별지 참조 인계 · 인수연월일 월 20 녉 일

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기에 「정치자금법」 제35조제2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계·인수합니다.

년 월 일

인계자 전 회계책임자 김 공 명 (인) 인수자 현 회계책임자 한 라 산 (인)

입회자 ○○시도의회의원(○○구시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대표자 ○○○ 직인

- 주 1. 인계·인수서는 회계책임자를 변경한 때마다 3부를 작성하여 인계·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, 나머지 1부는 회계책임자가 변경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.
 - 2. "인계·인수내역"란에는 재산, 정치자금의 사용잔액, 회계장부, 예금통장·신용카드, 후원회인·그 대표자 직인, 구입·지급품의서, 지출결의서,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및 정치자금영수증(원부포함)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으로 하되, 그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 - 3. "입회자"란에는 선임권자가 서명·날인합니다.

인계 인수 내역

	구	· 분	수량	금 액(원)	비고
정치	자금 수입·	지출보고서 출력물	1		
정	치자금 수	입·지출부 출력물	1		
정치자	금 회계관리	믜 프로그램 백업파일	1		
	영수증 등	지출증빙서류	50		증빙서류 총매수기재
	人ol Q	00은행, (123-45-678901)	1	5,000,000	통장잔액 기재
신 고 된 예금계좌	수입용				
	지출용	00은행, (123-45-678901)			
체크카드	트(00은행,	9410-3210-0000-0000)	1		
		책상	4	50,000	
		의자	2	20,000	
	7	· 크퓨터	1	500,000	
		:	:	:	

[※] 인계·인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함.

10.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신청

가. 후원회 등록신청서 제출 시 전자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.

Ø.

정치후원금센터란?

- □ 정치후원금센터 개요
 - 정치후원금센터는 후원금의 모금 및 전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중앙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
- □ 특징 및 장점
 - 전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가능
 - 후원인이 정치자금영수증 분실 시 재발급 용이
 - ※ 지방의원후원회는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기부(전자결제)는 할 수 없으며, 전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업무만 가능
- □ 접속주소
 - **후원회** : 후원회관리자사이트(https://support.give.go.kr:442)
 - ▶ 후원금 모금내역 입력·수정, 영수증 출력, 회계보고용 파일 추출 가능
 - **후원인** :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give.go.kr)
 - ▶ 후원회 연락처·주소 등 검색, 전자 정치자금영수증 직접 출력 가능
- 나.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신청서는 [작성예시]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후원회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.
- 다. 신청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위원회 정당과에 제출합니다.
- 라. 후원회 관리자사이트(http://support.give.go.kr:442)의 계정 정보(아이디, 비밀번호)는 중앙위원회에서 메일,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합니다.

정관작성 ➤ ^{창립} 개	l총회 최 ➤ ^호	회 의 록 학 성 ➤	후 원 회 지 정	▶ 인 영 조 각	➤ 사무소 설 치	>	등 신	록 청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

전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방법

- □ 1단계 : 정치후원금센터 후원회 관리자사이트(http://support.give.go.kr:442)에 접속합니다.
- □ 2단계 : 후원금 모금내역을 등록합니다.
 - ▶ 메 뉴 : [후원금관리] [후원금등록] [일괄등록/수기등록]
 - ▶ 방 법 : 수기등록(1건) 또는 일괄등록(100건)
- □ 3단계 : 전자 정치자금영수증을 출력합니다.
 - ▶ 메 뉴 : [후원금관리] [후원금/영수증관리] [출력하기] 버튼
 - 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'[부록3] 정치자금영수증 전자발급 안내매뉴얼'참조

 정관작성
 →
 창립총회 개 최
 →
 회의록 작성
 →
 후원회 지정
 →
 인명 조각
 →
 사무소설 치
 →
 전

[작성예시]

정치후원금센터 사이트 이용신청서

		Ŧ	<u> 1</u>	크	내 용	비	고
후원회명				B S	○○사도의회의원(○○구사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		
정 당 명				변 8	소속 정당명 또는 무소속		
선거구병				립	비례대표시·도의회의원 : ○○시·도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 : ○○구·시·군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 : ○○시·도의회의원○○구·시·군제1선거구 지역구구·시·군의회의원 : 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○○구·시·군가선거구		
)o -	원	<i>(</i> 이	대표자	성 명	홍길동		
				생 년 월 일	1950. 3. 1.		
				휴대폰번호			
			회 계 책임자	성 명	김유신		
				생년월일	1970. 5. 1.		
				이 메 일			
				휴대폰번호			
			사무실	주 소			
				전화번호		공개	용
	부 령계		은 행 명		은행명		
			예금주명		예금주명		
		솨	계좌번호		선관위에 신고된 후원회 수입용 예금계좌 중 1개 선택		

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 사이트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대표자 **직인**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후원인 개인정보의 수집·보유 및 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,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치후원금센터 개인정보처리 방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